

②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제정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 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환경정화 대상지역 등의 가림간판 허가시는 심의위원회의 허가여부, 규격결정 등의 사전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 1)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 가림간판
- 2)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고속도로 및 철도의 주요경계시설의 가림간판
- 3) 환경정화 대상지역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 보관 또는 처리하는 장소 등의 가림간판
- 4) 기타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있고,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한 5인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1) 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도시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 2) 외부위원으로 국어학자 또는 국어교사,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미술, 디자인 등에 관한 전문가와
- 3) 기타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음.

□ 검토의견

○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구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사항의 인허가시 사전 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근원에는 문제가 없으며,

○ 제2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위원장을 포함한 5인내지 9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조제3항에 도시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원장을 포함 공무원수는 4인이상으로 임명이 가능하여 과반수를 초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조언·권고·건의·심의·조사등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문기구의 근본취지에 배치되는 사안이며 또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도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관계공무원의 수를 반수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4조의 기능에서 심의 대상은

· 동조 제1호에서 정한 사항은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써

1)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 가림간판의 설치

2) 건교부장관이 승인하는 고속도로 및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설치

3) 환경정화 대상지역 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수집·보관 또는 처리하는 장소 등의 가림판의 설치등으로 위원회의 업무범위가 명확하나,

· 동조 제2호에서 정한사항은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가 불분명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 참고로 지난 95년 이후 최근 3년간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 설치수는 통일로상의 방호벽에 설치된 가림간판 6개소와 자유로변 군사시설 가림간판 8개소중 총 14개소 뿐임을 보고드립니다.